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15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6월 17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급격하게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‘개인형 이동장치’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등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시장이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상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한편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- 현재 중앙정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 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재정상의 조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

2. 주요 골자

- 가.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명시함 (안 제9조)
- 나.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의 내용을 명시함 (안 제10조)

3. 참고 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1항 중 “마련하여야 한다.”를 “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(의원발의안)	수 정 안(전문위원실안)
<p>제8조(실태조사) 시장은 제 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(실태조사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 (안전교육 등)</p> <p><u>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</u> <u>2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</u> <u>3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</u> <u>4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</u> <u>5.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 <p><u>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</u></p>	<p>제8조(실태조사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(개정안과 같음)</u></p>

현행	개정안(의원발의안)	수정안(전문위원실안)
	<p>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	
<p><신설></p> <p>제9조·제10조 (생략)</p>	<p>제10조(재정지원 등)</p> <p>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,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·제12조(현행 제9조와 제10조와 같음)</p>	<p>제10조(재정지원 등)</p> <p>① ----- -----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1조·제12조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,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 (안전교육 등)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
2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
3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
4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,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실태조사)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8조(실태조사)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9조 (안전교육 등)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</u> <u>2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</u> <u>3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</u> <u>4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</u> <u>5.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 <p><u>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180 315 336 353"><신설></p> <p data-bbox="180 907 520 945"><u>제9조·제10조</u> (생략)</p>	<p data-bbox="810 315 1410 539"><u>제10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10 562 1410 853"><u>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,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810 907 1410 1010"><u>제11조·제12조</u>(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)</p>